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 1 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"법") 제 58 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,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,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누버거버먼 그룹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용어정의) 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자산/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
   가. 운용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 부터 지급받는 보수.
   나. 성과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지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(법 제 86 조, 동 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 4-65 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 가능)
   다. 판매회사 보수: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받는 금전
   라. 신탁업자 보수: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보관자로서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 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: 일반회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 운영을 대신 해준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 부터 지급받는 보수
2. 수수료
   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
   나. 환매수수료

제 4 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집합투자기구와 일임/자문자산 간에 사유 없는 수수료 차별은 금지된다.

③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.

제 5 조(수수료 의 부과절차) 보수수 및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, 포트폴리오의 규모, 요구 되어지는 서비스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투자자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
제 6 조(총비용비율한도의 관리)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과도한 비용 발생을 지양하기 위하여 총비용비율한도(TER: Total Expense Ratio)를 관리하며 항상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한다.

제 7 조(설명의무) 회사는 법 제 47 조제 1 항 및 동 시행령 제 53 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8 조(투자광고)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 57 조제 2 항 및 법 시행령 제 60 조제 1 항에 따라,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 190 조 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완비하여 신탁업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공시) 회사는 법 제 58 조 제 1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협회에 대한 통보) 회사는 법 제 58 조제 3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기준의 제정 및 개정) 이 기준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부칙(2020. 7. 15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가이드라인은 2020 년 7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